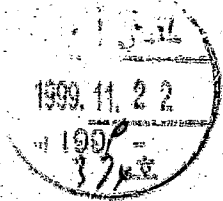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우 100-744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전화 02)-3707-9614 /전송 02)-3707-9629
 처리부서 : 공원녹지과 과 장 : 최용호 담당사무관 : 박문수 담당자 : 하재호

문서번호 공복 58215-2058
 시행일자 1999. 11. 22. ()
 경유 (제1안)
 수신 내부결재
 참조



보존기간	30년	시	장
공개여부	공개		
1부시량			
실 장		법무담당관(차)	
과 장	전 철	도시공원담당사무관	
기안자	하재호		협조
심사자	박문수	심사일	99. 11. 22

제목 도시계획시설(담십리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1. 동대문구 공복 58215-421('99. 11. 2)호와 관련입니다.
2. 건설부고시 제1977-138('77. 7. 9)호와 서울특별시고시 제1997-203('97. 6. 19)호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 및 변경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2-168('92. 5. 27)호와 서울특별시고시 제1998-269('98. 7. 28)호에 의거 조성계획이 결정 및 변경결정된 동대문구 담십리동 산2-9번지 일대 담십리근린공원에 대한 조성계획변경안이 우리 시 도시공원위원회 '99년도 제4차('99. 10. 13) 심의에서 조건부 가결되어 덧붙임과 같이 지적사항을 보완하였으므로,
3. 도시공원법 제4조와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법 제10조제1항에 의거 조성계획을 변경결정하고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과 같은법시행령 제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자 합니다.

- 덧붙임 : 1. 고시문(안) 1부.
 2. 도시계획시설(배봉산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도서 각 1부.
 3. 지적사항 조치보고 1부. 끝.

원근데소원

서울특별시장

(제2안)

수신 건설교통부장관

참조 도시관리과장

제목 도시계획시설(답십리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보고

1. 건설부고시 제1977-138('77. 7. 9)호와 서울특별시고시 제1997-203('97. 6. 19)호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 및 변경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2-168('92. 5. 27)호와 서울특별시고시 제1998-269('98. 7. 28)호에 의거 조성계획이 결정 및 변경결정된 동대문구 답십리동 산2-9번지 일대 답십리근린공원에 대하여

2. 도시공원법 제4조와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법 제10조제1항에 의거 조성계획을 변경결정하고 이를 보고합니다.

덧붙임 : 1. 고시문(안) 1부.

2. 도시계획시설(답십리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도서 각 1부. 끝.

서울특별시장

(제3안)

수신 행정자치부장관

참조 법무담당관

제목 관보게재 의뢰


우리 시 도시계획시설(답십리근린공원)에 대하여 조성계획을 변경결정하고 관보게재를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고시 제1999- 호('99. .)

나. 고시명 : 도시계획시설(답십리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다. 법적근거 :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

덧붙임 : 고시문 및 조서 각 2부. 끝.

원본대조필 

서울특별시장

(제4안)

수신 동대문구청장

참조 공원녹지과장

제목 도시계획시설(답십리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통보

1. 공녹 58215-421('99. 11. 2)호와 관련입니다.

2. 도시계획시설(답십리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요청에 대하여 도시공원법 제4조와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법 제10조제1항에 의거 조성계획을 변경 결정하였음을 통보하니, 관계도서 사본을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3. 특히, 조성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지적 승인 등 관련법규에 따라 제반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기 바랍니다.

덧붙임 : 1. 고시문(안) 1부.

2. 도시계획시설(답십리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도서 각 1부. 끝.

서울특별시장

원본대조필

서울특별시고시 제1999-77K 호

건설부고시 제1977-138('77. 7. 9)호와 서울특별시고시 제1997-203('97. 6. 19)호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 및 변경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2-168('92. 5. 27)호와 서울특별시고시 제1998-269('98. 7. 28)호에 의거 조성계획이 결정 및 변경결정된 통대문구 답십리동 산2-9번지 일대 답십리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법 제4조와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법 제10조제1항에 의거 조성계획을 변경결정 하고,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과 같은법시행령 제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제 34	심사	1999. 11. 22	제 77K 호
담당자	민정	신정	법무담당관
이승복	민정	신정	수보사

1999년 11월 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답십리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결정(안)

가. 도시계획시설(공원)명 : 답십리근린공원

나. 위 치 : 통대문구 답십리동 산2-9번지 일대

다. 면 적 : 157,916㎡

라. 도시계획시설(답십리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조서 : 별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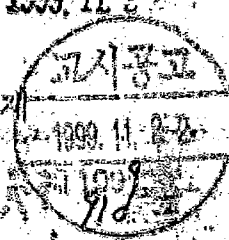
마. 도시계획시설(답십리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도면 : 개제생략

바. 시민들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원녹지과(전화 3707-9614)와 통대문구 공원녹지과(전화 920-1395)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우편번호 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 / (02)3707-9035 ~ 6 / 전송 (02)3707-9049
 처리부서: 재산관리과(서소문법관, 13층) / 과장 이상섭, 담당사무관 정우성, 담당 김해수

문서번호: 재산 58421-268
 시행일자: 1999. 11. 22 (수)
 1999. 11. 22
 (경유) 제 1 안
 수신 내부결재
 참조



보존기간	영구	시	장
공개여부	공개	이 상 섭	
과 장	전 결		
기 안	제 1 안	법무담당관 심사필	
심사자	김해수	특유재산처분팀장 정우성	
		합 조	
		심사일	99. 11. 22

제목 '99제2회시유재산매각보류공고



1. 도청 58060 - 2699(99. 11. 19)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공고 제1999-648(99. 7. 29)호에의거 시유재산 공개 '99제 실시후 2회 이상 유찰된 재산에 대하여 2000. 3. 31까지 공개수의 계약에 의하여 매각토록 하고 있으나
 3. 우리시 토지관리 부서의 매각보류 요청한 아래 토지에 대하여 수의 매각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 가. 매각재산보류공고내역.

당 초 매 각 공 고						보류공고사유
재산 번호	지구 명	소 재 지	면 적 (㎡)	예 정 가 격	토지이용계획	
36	개포	강남구 포이동 168-7	276.9	399,982,050	도시지역 일반주거지역	마을마당조성지
38	개포	강남구 포이동 168-8	276.9	399,982,050	도시지역 일반주거지역	"

수 신 : 강남구청장

참 조 : 공원녹지과장

제 목 : 체비지보류요청회시

1. 공녹 52577-2018(99.11.9)호에 의거 매각보류 요청한 강남구 포이동 168-7, 8호 체비지에 대하여, 공개수의매각 대상에서 보류하니, 업무에 참고하고 도시정비과와 협조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

전결 재산관리과장 이상설

서울특별시공고 제1999 - 9/4 호

고시번호	1999.11.22 제1950호
담당자	법정대법원법무담당관
이동부	전부 이동부

서울특별시공고 제1999-648호('99. 7. 29)로 매각 공고한 시유 재산중 아래 재산에 대하여 매각을 보류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1999. 11.

서울특별시장

시유재산매각보류공고(안)

당 초 매 각 공 고						매각보류사유
재산 번호	지구 명	소 재 지	면적 (㎡)	예 정 가 격	토지이용계획	
36	개포	강남구 포이동 168-7	276.9	399,982,050	도시지역 일반주거지역	마을마당조성지
38	개포	강남구 포이동 168-8	276.9	399,982,050	도시지역 일반주거지역	"